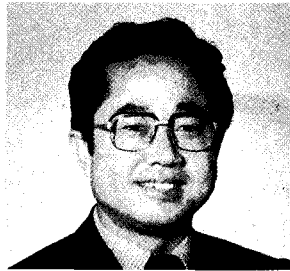


UR협상과 우리의 대응



장 원 석
단국대농업경제학 교수

I. 문제의 소재

2년전 88년5월14일 우리정부는 당초 수입예정량인 1,200%의 12배가 넘는 15,000%의 쇠고기를 연내에 수입하기로 미국정부에 약속하였다. 당시 이 뉴스가 전해지자 축산농민은 물론 관심인 모두가 크나큰 동요를 보였다. 84년 소값 파동의 악몽이 떠올려짐을 물론 1,500%을 수입할 경우, 사육두수는 399,000두가 줄어들고, 391,200가구와 그 가족을 포함 203,400명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처럼, 축산농민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엄청난 물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국민적 최대의 행사인 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는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호소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자신에게 닥쳐올 피해를 뻔히 알면서도 올림픽을 전후로 시위가 자제하는 아량을 보였다.

금년도 쇠고기수입량은 8만%으로 계획되어 있어 불과 2년만에 5배 이상이나 늘어났고, 국내 쇠고기시장의 50%이상이 이미 잠식되었다. 그런데도 그 충격

의 목소리는 88년 당시보다도 오히려 작아진 느낌이다. 소사육을 포기하고 전업을 하였거나 목소리 높이에 지치기도 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488개 농·축·수산물 전부를 개방해야 된다는 UR동풍에 밀려 개별품목에 대한 요구사항이 빛을 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었다.

낙농업도 파동의 연속이다. 4~5개월전만해도 분유계고는 적정량의 3배에 이르렀고, 수입유제품은 물밀듯 몰려와서 이미 국내시장의 15~20%가 된바있다. 하지만 수입창구는 다원화(농림수산부, 보사부, 교통부)되어 사후관리를 할 수 없고, 코코아 조정품, 영양이유식 “밀루과” 등 조정유제품과 불법유통 유제품이 수입되어 낙농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원유가 부족하여 원유쟁탈전등이 벌어진다.

원래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수입은 당해품목의 농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상호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쇠고기나 유제품을 수입하게 되면 낙농육우농가뿐만 아니라 작목대체에 의한 공급

과잉으로 채소, 과일등 모두 농업부문에 연쇄적인 가격폭락이 유발되고 값싼 외국산 쇠고기로 소비수요가 몰려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등 모든 육류가격이 파동을 겪게 된다. 다음단계로는 소사육두수가 줄어 들고, 쇠고기가 품귀되면 국내쇠고기값이 오른다. 이때 정부는 기다렸다는듯이 수입량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외국산 쇠고기를 싸게 먹여주며 물가안정을 기한다고 생색내기에 바빠진다. 수입개방을 시작한 70년대 하반기 이후, 78년의 돼지파동, 80년대의 소값파동, 배추파동, 고추파동등의 연례행사와 이러한 와중에서 수입에 열올려온 그간의 사실이 이를 실증하고도 남는 일이다.

더구나 금년 가을부터는 듣기에도 생소한 우루과이라운드(UR)라는 괴물이 나타나 무너져가는 농촌을 아예 초토화해버릴 기세라서 이해당사자인 농민의 심기는 그야말로 무어라 형용할 길이 없게 되었다. UR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의 내용은 극히 일부의 비교역적 관심(NTC)품목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유예기간이나 보조금감축이행기간을 거쳐 완전자유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농축산물을 원래 자유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수입자유화면제조항(waiver), 조부조항(grand fatherign), GATT 제11조 및 18조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왔던 것인데 수출강대국들은 그들의 국익을 위하여 농산물무역도 자유화하겠다고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무역관계와 GATT의 체제 및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힘으로 밀어 붙이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이다.

따라서 피해당사자인 농민은 협상자체를 거부하는 시위에 나서기에 이르렀고 교수들까지도 서명에 의하여 입장표명을 하는 등, 그 여파를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II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

이정도되면 정부는 자세를 가다듬어야함에도 구태의연한 발상과 처방에 머물러있다. 한술 더떠서 정치권은 실언과 실책의 연속선상에서 민생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것처럼 비쳐진다. 기껏해야, 당정회의를 열어 「농민들이 뭘 모르고 있으니 홍보를 잘하도록 해야하며 농민의 인구비중을 5%이내로 줄어야 한다.」는 등 마치 국익과 관계없이 강대국의 논리와 UR결과만을 학수고대, 비호하는듯한 발언만있을뿐이다.

물론 힘이 약하니 양보할 수 밖에 없다는 그들의 변명도 이해는 할만하다. 그렇기때문에 더욱더 패배주의에 빠지지말고, 국민의 여론을 불러 일으키고 온갖 중지를 모아 강대국의 힘이 정의가 아니라 약소국의 정의도 힘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외적 협상에서는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대내외적으로 농산물 수입자유화 불가피론과 한국농업 한계론을 내세우며 국민을 설득하려는 무책임한 형태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민과 소비자가 연대하여 대응해도 부족한데, 위 문제를 농민만의 문제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이번 추곡수매가 결정과정에서와 같이 농민과 소비자간을 이간시키고, 농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자아내어 농민의 대응을 탄압하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실효성이 없는<농어촌 발전종합 대책>만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국내 농업기반의 후진성 등 객관적이고도 냉엄한 현실을 출발점으로 하되, 향후 우리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적극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정부가 하루속히 마련하여 국민 앞에 제시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정부의 실천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여기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반영시켜야 할 내용을 필자가 농업정책분과위원장으로 있는 「경실련」의 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Ⅲ. 교섭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

첫째 한미 양국정부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의 협조방침을 철화해야 한다.

UR협상의 기본정신, 즉 GATT체약국간의 무역자유화를 통한 이익의 균등배분정신을 위배하고 강대국 이익만을 강조한 UR농산물 협상에 있어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대해 농산물 협상에서 협조하기로 한 기존의 정부방침을 따르지 철화되어야 한다.

둘째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역적자국으로의 복귀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최근 KDI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국내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음은 물론 앞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스페인등이 적용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도 GATT18조 B항(BO P조항)에 의거 농산물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역적자국으로의 복귀를 GATT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국제수지적자여부를 매2년마다 심사하여 BOP졸업국(11조국)도 다시 18조국으로 돌아가 수입제한조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당국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는것은 잘못이다.

셋째, 수입개방 대상품목에 상업농 단계의 품목만을 포함시켜야 한다.

농업발전단계를 일반적으로 자급자족적 농업단계(Subsistence - Stage), 준상업적 농업단계(Semi-commercialized Stage), 상업농단계(Commercialized Stage)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농산물 생산이 준상업적 단계에 속하고 극히 일부 품목만이 상업용 단계에 있음을 감안할 UR협상의 수입개방 대상품목은 상업농단계의 품목에만 국한해야 한다. 준상업적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상업농단계에 이르기전까지 완전한 개방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가전략품목은 수입개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 국가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위한 최소한의 국가전략품목(National Minimum Requirement)은 국민적 합의하에 개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수출보조금의 우선적 감축을 요구하고, 수출보조금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국이 수입거부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농산물 수출국에 의한 수출보조금이야말로 농산물 무역을 왜곡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EC, 미국등의 수출보조금을 국내보조금에 앞서 빠른 속도로 감축하도록 주장하여야 함은 물론 수출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여섯째, EC수준의 수입부과금제를 실시해야 한다.

일곱째, 상대국에 대한 요구서 작성과 이를 위한 연구인력 및 자금지원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향후 쌍무협상에 대비하여 주요상대국의 수출보조금 및 국내보조금 지원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국에 대한 요구서(Request Sheet)를 작성하고 이 같은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최대한의 연구인력 및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

여덟째, 양허관세 재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콩, 밀, 옥수수등 현재 특허관세를 허용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양허관세를 재조정토록 요구하라

Ⅳ. 국내에서의 대응책

첫째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면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해야한다.

국민에게 재정부담을 지우고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상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

정한 헌법 제61조에 따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반드시 국회에서 이를 검토하고 검토결과 국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국회의 의의비준·동의를 거부하여 무효화시켜야 한다. 국익에 위반하는 국제협약은 국회가 거부하여 무효화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관례이다.

둘째, 농어민을 희생시키는 정경유착을 철폐시켜야 한다.

현재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경제활동을 촉박하고, 도시자본 및 대기업의 권익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경유착적인 농림수산법규와 제도 및 행정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민들 스스로에 의한 간단한 식품의 가공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농민들 스스로에 의한 정미를 금지하는 도정법, 농민들 스스로의 단순한 복합사료 생산까지 금지하여 비싼 상업용 사료의 사용을 강요하는 사료법 등을 개정하여 외국과 같이 농민들 스스로의 소득증대 활동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러한 농업부문의 정경유착이다.

셋째, 정부의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수입개방을 전제로 한 정부의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농업포기정책의 전형이다. 일례로 이 대책에서는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호당22.7ha정도의 전업농을 육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정도의 규모가 됐다고 해서 어떻게 195ha에 달하는 미국의 농가나 300ha가 넘는 호주나 캐나다의 농가와 경쟁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지난 9월 16일 노대통령의 언급과 같이 영세·소농을 이농·탈농시켜 농가인구를 5%이내로 줄인다고 해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오히려 농민들에게는 농업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과 대책내용은 취소·수정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1933년 제정된 농업조정법(A. A. A)에 의거, 신농업법을 5년마다 농업발전단계에 맞게 개정하여 농업의 보호·발전 및 농민의 구체적인 생활향상을 기하여 왔다. 우리도 대다수 농민의 저항을 받고 있는 정부의 대책 및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농어촌종합발전법을 폐기하고, 농업, 농민, 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에 미국의 신농업법과 같은 내용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

넷째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경쟁력 향상은 생산기반의 확충, 첨단과학을 이용한 농업기술의 혁신에 있다. 중진국이상의 국가 중 우리나라는 농업생산기반이 가장 취약하여 생산비가 높을 수 밖에 없으며,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에 가장 인색한 나라이다. 한국농업의 특성상 경쟁력은 규모확대가 아니라, 기술집약 자본집약형 농업으로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일본, 도나미가오까 단지의 현재 두당 착유량이 8천kg에 달하고 몇년내 1만kg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기술개발 및 낙농인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해온 결과이다.

다섯째, 소농경영에 유리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무농약, 유기농업을 장려하고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에 상응하는 정부의 식품안전표시 제도를 실시하여 국내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여섯째, 재해 때마다 “연구검토 중”으로 십여년을 미루어 온 농작물 보험과 가축보험을 즉각 실시하여 농산물 생산활동에 소득을 보장하고, 노령노인의 노후보장과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한 농민연금제도를 실시하며, 농촌의료보험을 통합의료보험으로 개편해야 한다.

일곱째, 품목별 농민생산자 단체를 육성하며 농업생산과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여덟째, 농산물 수입을 촉진하는 행위들을 규제해

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검역제도를 강화하며, 독점적 수입권을 이용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과 외국식품에 국내회사 상표를 붙여 수입판매하는 OEM방식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 특히 방송이 식품광고에서 외국산임을 강조함으로써 은연중에 외국산 식품이 우수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허위광고를 규제해야 한다.

아홉째, 농산물 무역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농산물 수입에 따른 국내 농민의 피해조사, 외국의 농산물 덤핑수출조사 및 농산물 수입조정을 담당할 농산물 무역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열째, 농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이 농민의 소득원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파동은 농민과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주는 반면, 유통상인에게는 폭리의 원천이 되어 왔다. 가공산업 역시 재벌기업 등 도시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원래 경제질서의 합리화 측면에서도 농산물 유통이나 가공산업은 농업생산자의 영역에 맡겨 상대적 빈곤층인 농민의 소득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열한째, 외국의 다국적 곡물상 및 식품업체의 국내 진출을 금지해야 한다.

국내 유통업이 개방될 경우 외국의 다국적 곡물상 및 식품업체가 국내에 진출하여 국내 농산물 유통을 장악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국내 농산물유통업 개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열두째, 농산물 수입에서 조달되는 재원을 농업발전을 위해 조달해야 한다.

농산물 수입관세와 수입부과금의 전액을 농업에 환원투자할 것은 물론 농산물 수입업체의 수입이익 중 50%이상을 “농업발전세”로 거두어 농업발전을 위하여 투자해야 한다.

열셋째, 농업의 GNP에 대한 기여함과 환경보전 기능을 감안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농업이 GNP에 기여하는 비중은 11%이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은 이에 못지 않게 높다. 대부분의 농업생산은 환경을 오염시켜 사회비용을 증대시키지만, 농지는 대기정화, 수자원 함양, 토사붕괴 유출방지, 보전, 휴양기능(일본의 경우 환경보전기능 평가액은 12조 1천 7백억엔으로서 농업생산액의 1.2배임)을 담당한다. 각종 공해와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가 심해져 가는 현실에서 이제는 예산책정의 기준을 일면적인 단순논리가 아니라, 농업생산액 및 환경보전기능을 동시에 감안하여 대폭 증액해야 한다.

열넷째, 수입창구를 생산자 단체로 유도해야 한다.

가장 소망스럽기는 70년대까지처럼 농축수산단체만이 수입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것이지만, 이미 일반기업에 수입허가를 해준상태이므로 향후엔 더이상 허가해주지 않고 오히려 제한하여야 한다. 현재 통조림등 축산물 가공품의 100% 1차상품의 80%이상을 재벌 등 일반기업이 수입하고 있어 돈버는 사람과 피해보는 사람이 따로 있게 되었다.

V. 낙농육우인이 해야할 일

현대국가는 10세기의 안가정부(Cheap Government)나 야경국가(Nachtwacher Staat)와는 달리 궁극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힘에 의하여 그 성격이 규정된다.

더구나 헤겔이 말한 이른바 「윤리적 총체」로서의 국가개념과는 거리가 멀고, 「자본의 총체」 혹은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힘의 총체」로서의 국가개념이 떠 올려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말하자면 점잖게 건의문이나 올리고 성명서나 발표해가지고는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이 정책담당자들의 태도였다.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고, 목소리를 높이며,

행동으로 보여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체질들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열거한 대외·대내정책은 낙농육우인을 포함한 전체 농민, 소비자, 지식인들이 모두 일어나 정부와 의회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일본정부처럼 농민시위를 은밀히 사주하거나 스위스의회처럼 UR협상내용에 대한 반대결의를 하는 등 정부나 의회가 농민을 대신하여 출선수범하지 않고 있는 차체에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거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이를 위해서 낙농육우인들은 소속된 단체와 관련단체 즉 낙농육우협회, 낙우회, 축협, 농협, 농민회등을 통하여 조직노선이나 성격의 차별성을 초월하여 수입자유화를 최대한 저지·유예시켜야 한다. 힘을 통해서만이 정의가 관철될 수 있고, 힘을 조직으로부터 나오기 마련이다.

조직적 대응이 아닌 개인적 대응은 실천의지가 없거나 또는 자기환상에 빠졌거나 아니면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수치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무임승차를 좋아하는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자의 자기변명이다.

다음으로 주요한 것은 비농민과의 연대이다.

원래 수입개방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모두의 일이고,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문제의 원천이다. 20~30만명정도의 이농은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추세일 수 있지만, 개방농정의 여파도 40~80만명씩의 이농홍수가 바로 실업자·도시빈민·저임금노동문제, 도시의 교통·주택·범죄·공해문제등을 심화시켜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겨준은 물론 사회불안, 경제불안, 정치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점은 도시의 소비자운동단체, 종교단체,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과 같은 시민운동단체, 환경운동단체, 교수 등 지식인단체등과 연대하여 국민차원의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물론 소비자운동단체인 주부클럽연합회를 등에 업고 경제기획원의 조종을 받아 높은 수매값인상을 농민대표들이 계속 주장하면, 전국의 소비

자를 동원하여 외국산 쌀 수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김천주회장과 같은 사이비운동가도 있지만, 농민·농촌문제를 생각하는 의식있는 선량한 시민들은 얼마든지 있다.

비농민과의 연대를 통하여 정부·의회에 대응함과 아울러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 “부도덕한 반농민적 기업제품의 불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외래문화의 침탈속에 정신과 혼까지도 외국의 잡귀에게 빼앗겨 가는 오늘날 체질마저 외제로 바뀌어 간대서야 말이나 되는가, 이것은 한낱 민족주의적 배타심이 아니고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원리에 비추어 우리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버는데만 눈이면 악덕기업들은 성장홀몬제건 방사능조사 식품이건간에 마구잡이로 농축산물을 수입하여 소비자건강을 위해롭게 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는 무우말랭이, 고사리는 물론 고추농민들이 고추를 불사르는 등의 와중에서도 고추는 물론 고추장, 된장등 닥치는대로 수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행태야말로 계층적, 계급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산업간의 불균형을 극화시키며, 자본주의체제의 건전한 발전을 왜곡시키는 그야말로 체제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이를 권력싸움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이나 무사안일과 은폐하기에 급급한 행정당국에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해 당사자인 농민이 주체가 되고 일반국민이 보조세력이 되어 기업의 사회적 윤리를 각성시켜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정부, 의회, 기업의 역할이 중요도에 있어서 위위가 있기때문에 지금까지 강조한 것뿐이지, 모든 책임을 낙농육우인 자신에게 귀결된다. 힘의 논리와 원칙의 논리를 고수함과 동시에 낙농육우인은 생산성제고, 생산비절감, 소비자지향의 품질의 고도화에 과거와 다른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보여야 한다.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냉철한 의지와 실천만이 궁극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 주기때문이다.